



#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사 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가수요에 따른 유통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악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① 조사 품목: 슈다페드정 (삼일제약(주)), 세토펜 현탁액 500ml (삼아제약(주))
- ② 조사 대상
  - (슈다페드정) '23.1.1.부터 '23.9.30.까지 10,000정 이상 구입한 약국·의료기관 중 청구량\*(사용량)/구입량이 25% 이하인 기관
    - \* '23.9.30.까지 심사결정 청구량 기준
  - (세토펜 현탁액 500ml) '23.1.1.부터 '23.9.30.까지 11개 이상 구입한 약국·의료기관 중 청구량\*(사용량)/구입량이 25% 이하인 기관
    - \* '23.9.30.까지 심사결정 청구량 기준
- ③ 조사 및 관련 조치 절차: 조사 대상 통보('23.12월 경 실시\*) → 조사 대상의 청구량(사용량)/구입량(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기준) 모니터링\*\*( '24.1~2월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현장조사 및 필요시 처분·고발 요청 검토('24.3월~)
  - \* 청구량 확인 시점 감안
  - \*\* 선정된 조사대상과는 별도로 수급불안정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지속 모니터링 예정
- ④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치 기준\*
  - \* 개별 의약품의 구체적인 수급 상황, 개별 기관의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조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기준일	청구량(사용량)/구입량
'23.9.30.	25% 이하
'23.10.31.	30% 이하
'23.11.30.	35% 이하
'23.12.31	40% 이하

3. 아울러, 의약품공급자가 특정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하였거나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약사법(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 등)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사 결과에 연계하여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조치 등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또한, 허위 품질 정보를 유포하여 의약품의 가수요를 일으키는 영업행위 등도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약국개설자 등은 상기 조치 등을 감안하여 자발적인 반품 등을 통해 적절한 재고량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 공급불안정이 예상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재기 등 과도한 재고를 확보하고 향후 공급 불안정 해소 후 반품을 통하여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의 운영을 삼가하여주시기 바라며, 경우에 따라 위법으로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약품유통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주무관 **유아람** 보건사무관 **김수연** 약무정책과장 **하태길** 전결 2023.9.7.

협조자

시행 약무정책과-4320 (2023. 9. 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4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93 팩스번호 044-202-3927 / [ram1482@korea.kr](mailto:ram1482@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